

전주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가단12986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7. 2. 8.

판결 선고2017. 3. 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640,458원과 그 중 20,389,748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12. 9.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155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09. 3. 2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전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4. 12. 18.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고 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추가보증료, 권리보전비용 등을 변제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3. 9. 28. 이후 연 12%이다.

나. 피고 A은 2016. 1. 28. 신전주새마을금고의, 2016. 2. 17. 전북은행의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3. 25. 신전주새마을금고에 대출원리금 4,068,780원, 전북은행에 대출원리금 16,320,968원 합계 20,389,74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추가보증료 490원, 권리보전비용 250,22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12.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 B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약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20,389,748원, 추가보증료 490원, 권리보전비용 250,220원 합계 20,640,458원과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20,389,748원에 대하여는 이행일인 2016. 3. 25.부터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보전채권인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5. 12. 9.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나, 피고 A이 원고와 2009. 3. 26. 및 2014. 12. 18.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이 그 직후인 2016. 1. 28. 및 2016. 2. 17.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16. 3. 25.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A이 피고 B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매매의 예약이든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채권담보의 목적이든 간에 그에 따른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으로 인하여 매매나 대물변제, 담보권 설정과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2010. 4. 16.부터 2010. 6. 7.까지 피고 A에게 총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향후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의 지급은 위 부동산에 기 설정된 보증금 1억 9,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의 대여금 9,000만 원을

매매예약금으로 갈음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란 사해행위 여부, 즉 사해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 B가 피고 C의 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김예영

별지